

<b>법 제9조제1항제2호</b>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실(국)	담당 부서(과)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처리과 공통		공통 업무	1.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나. 비밀취급 인가 다.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라.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2. 국가 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협상대책·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3.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4.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학교혁신지원실	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 기본정책 수립 및 개정	5. 통일대비 남북 교육과정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학교혁신지원실	교과서정책과 (동북아교육대책팀)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6. 동북아 교육(외교안보 등) 관련 정책동향
기획조정실	비상안전담당관	국가위기관리업무	7.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자체 계획 포함) 8. 을지태극연습 등 국가비상사태 대비 연습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실	국제교육협력 담당관	국제교육협력	9. ODA(공적개발원조), 비ODA 교육분야 예산 집행 내역 10. 유네스코 교육분야 업무 추진 사항 11. 국가(미주, 중남미, 중동 등) 간 교육협력 사항 12. 국제기구(OCED, UNESCO APEC 등) 및 지역협의체와의 교육교류 관련 업무 13. FTA 통상협력 내용 중 교육 분야 정보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정보화과	교육기관 정보보안 관련 업무	14. 보안성 검토에 관한 내용 15. 정보보호 현장점검에 관한 내용 16. 정보보호 취약사항 관련 정보